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촌계 관련 사항 법률로 상향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0619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어촌계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1) 어촌계 관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 법률로 상향	5
(2) 유사명칭 사용금지	19
(3)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	20
(4) 임직원의 위법에 대한 조치	23
2. 운영상 미비점 개선	26
(1) 겸직금지 완화	27
(2)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32
(3)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	34
(4) 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식	38
3. 용어 순화 등	40
[참고자료]	44

I. 제안경위

1. 제안자: 정 부
2. 제안일: 2025. 5. 28.
3. 회부일: 2025. 5.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촌계의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을 완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총회를 소집할 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의 정비(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53조의2제2항, 제62조제2항, 제67조, 제126조제1항, 제139조의4제2항 및 제162조)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지예산(收支豫算)’을 ‘수입·지출 예산’으로, ‘매취(買取)사업’을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으로 정비함.

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안 제44조제4항)
종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소집방법(안 제125조제5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총회를 소집할 때 회원에게 우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조합 간에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그 소집방법을 명확히 함.

라. 집행간부 등의 다른 직업 종사를 위한 절차 개선(안 제137조)
종전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인 임원뿐만 아니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경우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하여 다

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안 제169조제9항 및 제170조 제4항 신설, 안 제170조제5항)

1) 종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어촌계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어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안 제2장의2 신설), ②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3조의3제2항 및 제180조제1항), ③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를 현 지구별수협 조합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69조), ④ 어촌계 임직원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무정지·견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0조제4항 신설).

[표] 어촌계 관리와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규정 상향	어촌계 근거 (§15)	어촌계 목적, 구역, 설립, 정관, 어촌계원, 사업, 해산사유 등 시행령 규정 상향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신 설>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69)	지구별수협조합장	시장·군수·구청장. 단, 지구별수협조합장에게 위탁 가능
임직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신 설>

나. 검토의견

(1) 어촌계 관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 법률로 상향

- 현행법은 어촌계 설립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그 목적·설립·정관·어촌계원·사업·해산 및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2 제103조의2부터 제103조의9까지 및 제173조제3항 신설).

[표] 어촌계 관리에 관한 현행(시행령) 규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시행령)	개 정 안
목 적	제2조(어촌계의 목적)	제103조의2(목적)
구역 및 지사무소	- ※ 법 제15조제1항	제103조의4(구역 및 지사무소)
설 립	제4조(어촌계의 설립)	제103조의5(설립)
정 관	제5조(어촌계 정관)	제103조의6(정관 기재사항 등)
어촌계원 등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103조의7(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의 자격 등)
사 업	제7조(어촌계의 사업)	제103조의8(어촌계의 사업 등)
해산 사유	제8조(해산 사유)	제103조의9(해산 사유)
설립인가의 취소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개정안의 취지 검토

- 개정안은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계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시행령 제2조 <신설> 시행령 제4조	<u>제2장의2 어촌계</u> <u>제103조의2(목적)</u>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103조의5(설립)</u> ①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촌계는 어민들 상호간의 경제적 도움과 친목을 위한 협동조직으로 영리추구를 위해 협동작업을 하며,¹⁾ 자치조직이면서 영리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마을자치조직과 차별성을 가짐.²⁾ 법률적으로는 마을어장의 배타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로 그 성격상 어업공동체와 어촌공동체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도 있으나,³⁾ 대법원은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조직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⁴⁾

□ 현행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10명(섬의 경우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적·명칭·구역 등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함(법§15, 령§2·4·5).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으며(령§6), 어촌계는 교육·지원사업, 어업권 등의 취득 및 그 경영, 어선과 어구의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수행

1) 김진백, 「어촌계 내부 갈등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3권 제1호, 통권 109호, 2021. 218쪽

2) 김진백·이창수, 「어촌계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 유형 분석: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관점」, 『수산경영론집』, 제51권 제4호, 2020.12., 98쪽

3) 이창수·최완현, 「어촌계 가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산경영론집』, 제48권 제1호, 2017.3., 18-19쪽

4)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1045판결 참조

할 수 있고(령§7),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등에는 해산하며(령§8), 어촌계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령§9).

- 2023년말 기준, 전국 어촌계는 총 2,067개, 어촌계원은 약 10만 8,127명으로, 어촌계당 평균 구성원은 약 52명임.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전체 어촌계의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21.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어촌계 구성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이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66.9%)이 여성(33.1%)의 약 두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⁵⁾

- 어촌계는 수년간 인력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신규인력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 존재, 어업권 및 어장의 이용·관리 부실, 신규사업 추진의 운영능력 부족, 어촌계 지도·감독 미작동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⁶⁾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⁷⁾ 우수어촌계지원⁸⁾ 등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5) 어촌계 일반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6) 김대영·이현동, 「어촌계원 설문조사를 통한 어촌계 발전방향」,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2호, 2017.8., 4쪽

7)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후계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원받는 제도임.

8)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시설장비 구매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어촌계(20개)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 신규 가입을 통한 인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현재 어촌계의 설립 인가 및 정관승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업무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계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구별수협 정관(예)(해수부 고시)에는 어촌계에 대한 시정 명령 규정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제재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으로써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설립 인가·정관 승인 권한과 지도·감독 권한이 서로 다른 주체에 있어 발생하는 권한·책임 불일치를 해소하고,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① 어촌계의 구역, ② 정관 기재사항, ③ 어촌계의 사업, ④ 해산 사유 등과 관련하여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각 규정별로 검토함.

연간 총 20억원을 지원하였음.

② 어촌계의 구역 및 지사무소(안 제103조의4)

- 개정안은 어촌계의 구역을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어촌계의 구역은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4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u> <u>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법 제15조제1항	<u><삭제></u> <u>제103조의4(구역 및 지사무소) ① 어촌계의 구역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u> <u>② 어촌계의 구역은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u> <u>③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u>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어촌계 구역이 상호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지사무소 운영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의 구역은 어촌계원 자격, 마을어업 면허 대상, 어장 이용·관리의 공간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되는 기능적·관행적 해역 단위로서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⁹⁾ 해면의 좌표·연안선·수역 이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인접 어촌계 간 구역이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이를 정관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할 경우 어촌계 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¹⁰⁾

비록 현행법상으로도 어촌계의 구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구역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어촌계 운영과 어장 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구역 설정·변경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 어촌계가 정관

9)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령」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하부 시·군·구·읍·면·동 등 국가가 법령에 따라 설정·변경하는 공적 경계를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범위를 확정하는 법적·행정적 단위로서 주로 육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됨.

10) 어촌계 구역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 다툼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가 있고, 고등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어촌계 간 협정서, 도면, 이용 관행이 경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판시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5나15435 판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으로 일정한 공간을 업무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 또는 정관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사항이어서 그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 바,

업무구역을 임의로 설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분쟁해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③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103조의6)

□ 개정안은 어촌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3조의6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시행령 제5조	<u>제103조의6(정관 기재사항 등) ① 어촌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u>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시행령 제6조	<u>제103조의7(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의 자격 등) ① ~ ③ (생략)</u> <u>④ 어촌계는 준어촌계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u>⑤ 준어촌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시행령 제7조	제103조의8(어촌계의 사업 등) ① (생략) <u>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정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법률로 상향하고 있으나,¹¹⁾ 이에 더하여 다음 사항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i) 준어촌계원의 경비 부담 및 사업이용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103조의7제4항·제5항)은 개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 기재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어 권리·의무의 명확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ii) 어촌계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103조의8제2항)은 어촌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1) 다음 13개 사항임.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어촌계의 사업(안 제103조의8)

□ 개정안은 어촌계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3조의8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시행령 제7조	<u>제103조의8(어촌계의 사업 등)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 <u>1. 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u> <u>2.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u> <u>3.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u> <u>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u> <u>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u> <u>6. 수산물의 공동 제조 및 가공</u> <u>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u> <u>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u> <u>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u> <u>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u> <u>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u> <u>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u> <u>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u> <u>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u> <u>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u>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생활 향상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며, 공동사업의 수행은 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개정안은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문에서 어촌계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금 나열하고 있음.

□ 다만, 어촌계의 사업 중 교육·지원 사업(제1호), 생활필수품 등 공동구매(제4호), 후생복지사업(제8호) 등은 개정안 법문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103조의8제1항 각호),

어촌계가 수협의 하부조직으로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어촌계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자치조직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점, 개정안 제103조의2(목적) 조항에서도 어촌계의 목적이 어촌계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은 어촌계원보다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을 ‘어업인’ 대신 ‘어촌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또한,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5호)에 있어서도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일정한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어촌계의 업무구역과는 다르다는 점, 어촌 공동시설은 어촌 주민 모두가 동의 및 사용하도록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하거나 ‘어촌계 공동시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해산 사유(안 제103조의9 등)

- 개정안은 어촌계의 해산 사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9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시행령 제8조	<u>제103조의9(해산 사유)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u> <u>1.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u> <u>2. 총회의 해산의결</u> <u>3.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u> <u>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u> <u>4. 제173조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u> <u>②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어촌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시행령 제9조	<u>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u> <u>2.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u> <u>3.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4.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5. 제17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 개정안은 총회의 해산의결 및 설립인가의 취소 등 어촌계가 해산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별수협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해산 사유에 따라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실제 해산에 이르기까지 2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기한(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시점(해산하였을 때)과 보고의 기산 시점(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상이함에 따라 법 적용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문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유사명칭 사용금지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안 제103조의3 및 제180조제1항),

어촌계가 아닌 경우에 주민이나 어업인 등이 이를 공식 어촌계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상 인정된 어촌계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시행령 제3조	<u>제103조의3(명칭)</u> ①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생략)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u>제103조의3제2항</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3)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촌계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9조(감독) ① ~ ⑧ (생략)	제169조(감독)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시행령 제10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계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⑪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어촌계를 지도·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어촌계 업무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이 담당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령 §10).

또한, 어촌계의 설립 인가와 정관 승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령 §4·5), 설립·정관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도·감독 단계는 지구별수협이 맡는 구조임.

이와 같은 관리·감독 권한의 이원화는 어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정안은 어촌계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여 관리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감독 공백과 책임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어촌계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어촌계 업무의 지

도·감독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법문에 보완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안 제169조제11항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보조사업을 집행한 경우에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보완적 취지로 이해되나,

동 규정은 법문의 표현이 장황하고 중복되어 조문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명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임직원의 위법에 대한 조치

- 개정안은 어촌계의 업무·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견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등, 중앙회 또는 어촌계가 제2항·제4항에 ----- ----- -----.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 -----.

현행	개정안
제175조(청문)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75조(청문)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1. 2. (현행과 같음)

□ 현재 행정규칙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 2021-10호]’에 따라 지구별수협 조합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어촌계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정관·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어촌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¹²⁾

□ 현행 체계는 내부 지침 또는 집행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에서 어촌계 임직원에게 대한 불이익한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고,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불이익 조치를 정당화하기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어촌계 임직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독권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이익

12)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0호]

제11조(어촌계)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수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어촌계를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직무정지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

④ 어촌계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장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어촌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어촌계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을 수협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촌계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자치조직으로, 수협 또는 중앙회와 달리 공적 성격과 업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현행(수협등·중앙회)과 개정안(어촌계)의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비교

구 분	감독 주체	적용 대상	조치 내용
현행 (§170②)	해양수산부장관	조합등·중앙회	·임원: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직원: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	어촌계	상동

□ 한편, 전국 2,067개 어촌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권한 행사가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행사될 경우, 지역별·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져 불이익한 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절차를 정비하여 통일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2. 운영상 미비점 개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협의 대의원과 수협중앙회의 상임 임원 및 집행간부 등의 겸직금지 의무 및 승인절차를 완화하고(안 제44조제4항, 제137조), 지역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며(안 제51조제1항제5호),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 조회해서 이를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54조제3항), 중앙회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신설),

[표]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겸직금지 완화	지구별수협의 대의원 (§44)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 가능
	수협중앙회 간부 (§137)	겸직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상임 임원을 제외한 간부들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51)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內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명확화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		-	<신 설>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식 추가 (§125)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발송

나. 검토의견

(1) 겸직금지 완화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 대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제4항), 수협중앙회 간부직원의 겸직 승인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대의원회) ① ~ ③ (생략)	제44조(대의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u>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u> 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u>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u>)을 포함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u>이사회가 승인하는</u>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 ----- ----- 다음 <u>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은</u> ---- -----.
<신설>	1. 상임인 임원의 경우: <u>이사회</u> 의 승인
<신설>	2. 집행간부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소

현행	개정안
<신설>	<u>속 일반간부직원의 경우: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승인</u> 3. <u>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일반간부 직원 외의 일반간부직원의 경우: 회장의 승인</u>

□ 먼저, 수협 대의원의 겸직금지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대의원이 다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44④), 이 규정은 준용규정에 따라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협의 대의원은 어떠한 형태의 협동조합 임직원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음.

이는 해당 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의 구성원이 조합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의원회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됨.

□ 개정안은 수협 대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완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¹³⁾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복지·교육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 수산업과 직접적인 경쟁·이해관

13)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은 [참고 2] 참조

계가 없어 직접적인 이해충돌 우려가 적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까지 일률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경우 수협
대의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가 많아 대의원의 활동 참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려
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산업·어촌개발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수
행할 경우 해당 수협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 예외 허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 다음으로, 수협중앙회 임원 등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상임인 임원(2인, 감사위원장, 사업전담대표)과 집행간부
(4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대표) 및 일반간부직
원(83인, 집행간부를 제외한 간부직원)에 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
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¹⁵⁾

이는 임원 및 간부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에 얽혀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중앙회 업무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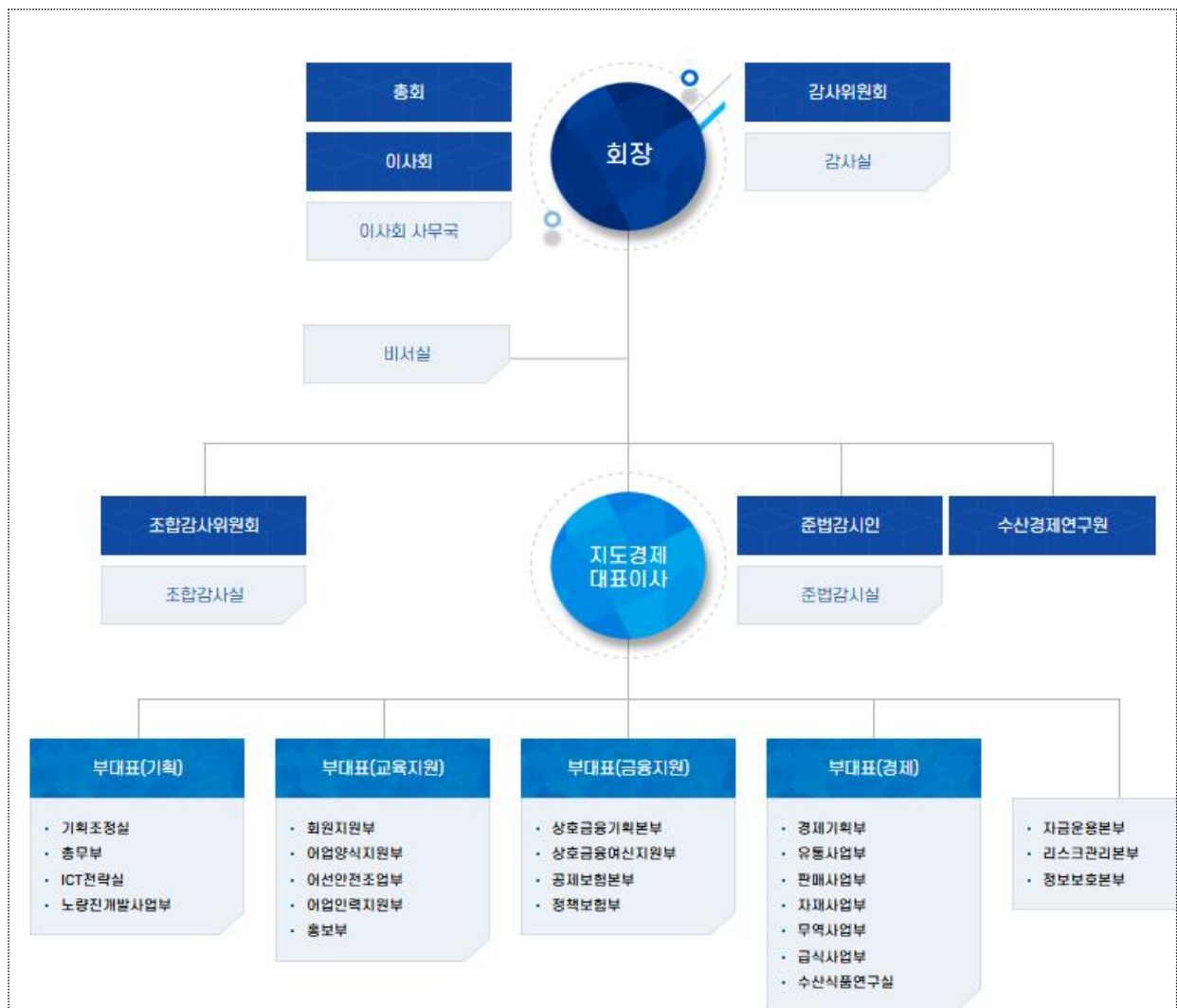
14) 2024년까지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조합의 수는 5천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수산물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수는 총 14개로 나타남. <https://www.sepp.or.kr/priorPurchsNotice/view/137> 참조

15) 수협중앙회 간부직원 현황 등은 [참고 3] 참조

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 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이러한 겸직 승인절차를 임원·간부의 지위와 권한·책임 에 비례하여 조정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임인 임원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유지하되,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 원은 그 상위 기관장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그림] 수협중앙회 조직



주 1: 상임인 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사업전담대표(지도경제대표이사) 2인임.

주 2: 집행간부는 지도경제대표이사 소속 기획·교육지원·금융지원·경제 부대표 4인임.

주 3: 일반간부는 부대표 소속 각 실 및 부의 장들과 회장 소속 실·국장, 지방 센터장들임.

□ 현행처럼 모든 검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두게 되면, 단순한 지역활동이나 비영리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수협중앙회 임원이나 간부들이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활동, 공익 목적 단체 참여, 학계·연구기관 자문 등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 중앙회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회장의 승인과 사업전담대표이사 승인으로 구분하여 검직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있는데, 현행 이사회 승인과 비교하면 회장 승인만으로도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 승인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검직허용 범위가 넓어질 우려도 있음.

따라서 기관장 승인으로 검직 허용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직 범위나 사전보고 의무 등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5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 게만 적용한다.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u>실형</u> 을 ----- ----- ----- -----
6.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 13. (생 략)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1①), 이 조항은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에도 준용되어,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형법상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로(「형법」 §41),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은 일반적으로 법정형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반면, 개정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유형을 의미함.

현행법은 금고이상의 형(제5호)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제7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제5호의 형은 실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실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3)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조회하여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신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임원 선거(제2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제외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제51조에서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총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상실·정지(제4호), 금고이상의 형(제5호)과 그 집행유예(제7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제8호의2),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제9호)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협 임원의 경우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조합원과 지역 사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도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정 범죄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이상의 형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나아가 수협 임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직접 조회하여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¹⁶⁾

후보자가 범죄 이력을 숨긴 채 출마하는 경우 조합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우므로, 범죄경력 제출을 통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특정한 범죄 유형(성폭력, 선거 관련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로 작동하는 반면, 개정안은 모든 범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16)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임원의 주요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에도 조합 및 중앙회 선거시마다 범죄경력조회(개인별 조회와 조합 차원의 조회 병행)를 통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관서에서 선거제출목적의 범죄경력조회 발부를 잘 안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관련한 임원의 자격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특히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6①), 실효된 형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회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령 §7의2②)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¹⁷⁾은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후보자가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¹⁸⁾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 후보자는 본인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임원선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행법 제54조제1항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

17)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후보자등록)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임원 선거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협 임원의 정수 및 선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6조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¹⁹⁾ 현행법상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제출과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19)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의 선출
 3.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하 생략)

(4) 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식

-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가 총회 소집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5조(총회)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25조(총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중앙회와 회원인 조합 간에 구축된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u>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u>제38조부터 제42조까지</u> , (...중략...)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168조(준용규정) ----- ----- ----- ----- ----- ----- ----- ----- ----- ----- <u>제38조, 제39조제1항, 제40조부터</u> -----.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수협 중앙회가 총회 소집시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

집통지서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68, §39②), 현재는 우편 발송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조합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른 선편 결항 등으로 우편 배송이 지연되어, 회원조합이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이미 구축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총회소집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3. 용어 순화 등

- 개정안은 “수지예산” 및 “매취사업”의 용어를 각각 “수입·지출 예산”과 “회원 또는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순화하고, 그 밖에 법문의 오류(지구별조합→지구별수협 등)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13조, 제37조, 제45조 등).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고, 법문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개정 내용은 필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u>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u>)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목적) ----- <u>이하</u> ----- ----- ----- ----- ----- ----- -----.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6. 사업계획의 수립, <u>수지예산(收支豫算)</u> 의 편성, 사업계획 및 <u>수지예산</u>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수입·지출 예산</u> 의 ----- <u>수입·지출 예산</u> 중 -----

현행	개정안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사업계획 및 <u>수지예산</u> 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 <u>수입·지출 예산</u> -----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이사회) ①·② (생략)	제45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계획 및 <u>수지예산</u> 중 제37조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 <u>수입·지출 예산</u> ----- ----- -----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략)	제3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
1. 직무상의 행위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u>수지예산</u> 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 ----- <u>수입·지출 예산</u> ----- -----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u>지구별조합</u> 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u>지구별수협</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생략)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매취(買取)사업</u>	4. <u>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u>지구별수협</u> 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u>수지예산서</u> 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① ----- <u>수입·지출 예산서</u> ----- -----.
② <u>지구별수협</u> 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u>수지예산</u>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수입·지출 예산</u> ----- -----.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4. <u>사업계획·수지예산</u> 및 결산의 승인 5. (생략) ② (생략)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 3. (생략) 4. <u>매취사업</u> 5. (생략) ③ ~ ⑤ (생략)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u>수지예산서</u>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u>수지예산</u>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u>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회원 및 그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u>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① ----- <u>수입·지출 예산서</u>----- ----- -----. ② ----- <u>수입·지출 예산</u>----- -----.

문의처

02)6788-5422

참고 1

어촌계 일반현황

① 일반 현황

- (어촌계) '23년도 전국 어촌계는 2,067개, 어촌계원은 108,127명 (준계원 2,560명 제외)으로 어촌계당 평균 구성원은 약 52명임
- 어촌계원 수는 전년 대비 감소(△1,536명)하였으나, 어촌계는 1개 어촌계에 마을이 3~4개일 경우 분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18개)
- (지역별) 전남이 42.2%로 가장 많으며, 경남 21.2%, 충남 8.4%, 경북 7.1%, 제주 4.9%임

구 분	합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촌계(개)	2,067	51	60	29	54	74	174	65	872	147	439	102
계원수(명)	108,127	3,460	6,365	1,807	3,903	3,276	13,387	6,311	40,594	4,615	16,825	7,584

- (연령별 및 성별) 70세 이상 43.3%, 60~69세 32.8%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76.1%(전년 대비 1.4% 증가)이며, 남성은 66.9%, 여성은 33.1%임

구 분	합 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남	여
22년도	109,438	446	2,152	7,048	18,072	35,545	46,220	73,421	36,062
23년도	108,127	406	1,874	6,587	16,951	35,447	46,862	72,388	35,739

② 어촌계 가입조건

- (가입금) 어촌계 가입금 조건이 없는 어촌계는 2,067개 중 913개로 전년 대비 35개 증가하였으며, 가입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107개임

년도	합계	0원	1백만원 이하	1~3백만원	3~5백만원	0.5~1천만원	1천만원 초과
22년도	2,049	878	368	356	209	125	113
23년도	2,067	913	328	386	201	132	107

- (거주기간) 어촌계 지역 거주기간이 없는 어촌계는 2,067개 중 779개로 전년 대비 64개 증가하였으며, 5년 초과 어촌계는 75개임

* 거주기간 : 3개월↓(780개), 3개월~1년(308), 1~3년(543), 3~5년(361), 5년↑(75)

년도	합계	0개월	3개월 이하	3개월~1년	1~3년	3~5년	5년 초과
22년도	2,049	715	2	325	543	386	78
23년도	2,067	779	1	308	543	361	75

③ 어촌계 어업권 등

- (어업권)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총 26만ha로, 이중 마을어업이 49.8%, 해조류양식 33.1%, 패류양식 11.5%, 어류양식 0.7%임
- (종사어업) 어촌계원의 종사어업은 신고어업이 50.0%로 가장 많으며, 어선어업 22.6%, 양식어업 15.7%임

④ 어촌계 소득 등

- (결산소득) 어촌계 결산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어촌계는 2,067개 중 166개이며, 1천만원 이하는 1,204개로 나타남

* 결산소득 : 1천만원↓(1,204개), 1~3천만원(362), 3~5천만원(160), 0.5~1억원(175), 1억원↑(166)

- (1인당 배당액) 어촌계 1인당 배당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어촌계는 2,067개 중 14개이며, 1백만원 이하는 1,864개로 나타남

* 배당액 : 1백만원↓(1,864개), 1~3백만원(146), 3~5백만원(22), 0.5~1천만원(21), 1천만원↑(14)

참고 2**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부처별)**

(기간: 2012.12.1. ~ 현재)

□ 201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수는
총 2만 5,715개로 파악됨

○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개 수
경찰청	3,914
대구	7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2
국가보훈처	312
국토교통부	1,027
기상청	847
농림축산식품부	1,046
문화재청	801
법무부	801
산림청	801
새만금개발청	801
여성가족부	801
중소벤처기업부	801
통일부	801
해양수산부	801
환경부	90
고용노동부	902
인천	498
교육부	695
국민권익위원회	3,221
금융위원회	566
기획재정부	1,255
농촌진흥청	888
문화체육관광부	301
보건복지부	301
산업통상자원부	301
소방청	301
외교부	301
통계청	301
특허청	301
행정안전부	301
합 계	2만 5,715개

자료: coop협동조합, <https://www.coop.go.kr/home/index.do#first>

참고 3

수협중앙회 임원 및 간부직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임원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을 포함,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 (수협법 제129조제1항) ○ 임기 : 회장 4년, 대표이사 및 이사 2년, 감사위원 3년 ○ 선출 : 총회 선출 ○ 직무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대표 및 전담 - 회원에 대한 감사,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다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수협법 제130조제2항)	사업전담대표이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등의 업무 대표 및 전담(수협법 제131조)	감사위원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사항 감사(수협법 제133조)	(비상임)이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
(상임임원)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 (수협법 제129조제2항)			
간부직원	중앙회와 근로계약에 있는 직원 중 일반직원과 달리 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갖는 자로서 간부직원은 상법의 지배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다른 직업 종사 제한 등의 의무를 지니며, 별도의 형벌규정을 적용받음(수협법 제136조제5항, 제137조, 제177조) - 중앙회의 간부직원에는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이 있음.			
(집행간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수협법 제136조) - 명칭 : 상무 - 임기 : 2년. 연임시 1년 단위(다만, 두 번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임면권자 : 대표이사 - 정수 : 5인 이내 - 업무 : 대표이사 보좌 및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수협중앙회 정관 제76조의2)			
(일반간부직원)	집행간부를 제외한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대표이사가 수행(수협중앙회 정관 제77조) 정관 제77조제4항에 따른 일반간부직원은 특정업무본부장, 부서의 장, 준법감시인과 직제규약 제7조제3항에 따른 실·단·팀장 및 지사무소장으로 함(직제규약 제17조)			

자료: 수협중앙회